

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의안 번호	851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2011년 월 일
발 의 자 : 김영길 · 고희근 · 황세영 · 이효상
· 서경환 · 김순점 의원(6명)

1. 개정사유

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에 따라 법률과 상충되는 부분을 수정 또는 삭제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제2조(감사) 제2항 및 제9조(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) 제5항의 일부 조문 변경
 - ▶ “7일 이내” ⇒ “9일의 범위에서”
 - ▶ “증언 또는 진술을” ⇒ “허위증언 · 선서거부 · 정해진 기간까지 요구서류 미제출 또는 진술을”
- 법령정비 기준
 - ▶ 다음 각호의 1과 ⇒ 다음 어느 하나
 - ▶ 아니된다 ⇒ 안된다
 - ▶ 하여야 ⇒ 해야
 - ▶ 기타 ⇒ 그 밖에

3. 근거법규

- 지방자치법 제41조(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)

4.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: 따로붙임

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2조 제2항 중 “7일 이내로”를 “9일의 범위에서”로 한다.

제5항 중 “통지하여야”를 “통지해야”로 한다.

제3조 제7항 중 “통지하여야”를 “통지해야”로 한다.

제5조 제1항 중 “각 호와”를 “어느 하나와”로 한다.

제2항 중 “협의하여야”를 “협의해야”로 한다.

제8조 중 “아니된다”를 “안 된다”로 한다.

제9조 제1항 중 “통하여”를 “통해”로 “행하여야”를 “행해야”로 한다.

제2항 중 “협조하여야”를 “협조해야”로 한다.

제5항 중 “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”을 “허위증언·선서거부·정해진 기간까지 요구서류 미제출 또는 증언·진술을 거부한 때에는”으로 한다.

제10조 제2항 중 “하여야”를 “해야”로 한다.

제10조 제3항 중 “하여야”를 “해야”로 “의하여야”를 “의해야”로 한다.

제11조 제1항 중 “아니한다는”을 “않는다는”으로 “아니할”을

“않을” 로 한다.

제3항 중 “위하여” 를 “위해” 로 “대하여” 를 “대해” 로 한다.

제12조 중 “기타의” 를 “그 밖의” 로 한다.

제13조 중 “아니할” 을 “않을” 로 한다.

제14조 제2항 중 “하여야” 를 “해야” 로 한다.

제3항 중 “대하여” 를 “대해” 로 한다.

제15조 제1항 중 “아니하도록” 을 “않도록” 으로 “주의하여야”를 “주의해야” 로 한다.

제2항 중 “누설하여서는” 을 “누설해서는” 으로 “아니된다” 를 “안 된다” 로 한다.

제3항 중 “처리하여서는” 을 “처리해서는” 으로 “아니된다” 는 “안 된다” 로 한다.

제16조 제1항 중 “보고하여야” 를 “보고해야” 로 한다.

제2항 중 “침부하여야” 를 “침부해야” 로 한다.

제17조 제3항 중 “보고하여야” 를 “보고해야” 로 한다.

제18조 제3항 중 “아니하거나” 를 “않거나” 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구조문 대비 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-----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-----.	제1조(목적) -----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-----.
제2조(감사) ① (생 략) ② -----정례회 기간중 7일 이내로 실시하되 -----. ③ ~ ④ (생 략) ⑤ ----- 통지하여야 한다.	제2조(감사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정례회 기간중 9일의 범위에서 실시하되 -----. ③ ~ ④ (현행과 같음) ⑤ ----- 통지해야 한다.
제3조(조사) ① ~ ⑥ (생 략) ⑦ ----- 통지하여야 한다.	제3조(조사)① ~ ⑥ (현행과 같음) ⑦ ----- 통지해야 한다.
제5조(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)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~ 5. (생 략) ② 의회는-----협의하여야 한다.	제5조(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)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어느 하나와 같다. 1. ~ 5. (현행과 같음) ② 의회는-----협의해야 한다.
제8조(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) -----아니된다.	제8조(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) -----안 된다.
제9조(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) ①감사 또는 조사 위원회가-----통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. ②-----협조하여야 한다. ③ ~ ④ (생 략) ⑤제1항의 요구를-----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-----.	제9조(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) ①감사 또는 조사위 원회가-----통해 이를 행해야 한다. ②-----협조해야 한다. ③ ~ ④ (현행과 같음) ⑤제1항의 요구를-----허위증언 · 선서 거부 · 정해진 기간까지 요구서류 미제출 또는 증언 ·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-----.
제10조(증인의 선서 등) ① (생 략) ② -----하여야 -----. ③-----엄숙히 하여야 하며 별표의 선서문에 의하여야 한다.	제10조(증인의 선서 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해야 -----. ③-----엄숙히 해야 하며 별표의 선서문에 의해야 한다.

신 구조문 대비 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1조(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)①-----응하지 아니한다는 -----공개하지 <u>아니</u>할 수 있다.</p> <p>② (생 략)</p> <p>③ ----- 진술을 하기 위하여-----출석한 자에 대하여 -----.</p>	<p>제11조(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)①-----응하지 <u>않는</u>다는 -----공개하지 <u>않</u>을 수 있다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진술을 하기 위해 -----출석한 자에 대해 -----.</p>
<p>제12조(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)-----감사 또는 조사는-----<u>기타의</u> 장소에서 할 수 있다.</p>	<p>제12조(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)-----감사 또는 조사는-----<u>그 밖의</u> 장소에서 할 수 있다.</p>
<p>제14조(제척과 회피)① (생 략)</p> <p>② -----조사하게 <u>하</u>여야 한다.</p> <p>③ --조사에 <u>대</u>하여 --.</p> <p>④ (생 략)</p>	<p>제14조(제척과 회피)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조사하게 <u>해</u>야 한다.</p> <p>③ --조사에 <u>대</u>해 --.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5조(주의 의무) ①--누설되지 <u>아니</u>하도록 <u>주의</u>하여야 한다.</p> <p>② ----- 누설하여서는 <u>아</u>니된다.</p> <p>③ -- 부당하게 <u>처</u>리하여서는 <u>아</u>니된다.</p>	<p>제15조(주의 의무) ①--누설되지 <u>않</u>도록 <u>주의</u>해야 한다.</p> <p>② ----- 누설해서는 <u>안</u> 된다.</p> <p>③ -- 부당하게 <u>처</u>리해서는 <u>안</u> 된다.</p>
<p>제16조(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고)① -----본회의에 <u>보</u>고하여야 한다.</p> <p>② -----근거 서류를 <u>첨</u>부하여야 한다.</p> <p>③ (생 략)</p>	<p>제16조(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고)① -----본회의에 <u>보</u>고해야 한다.</p> <p>② -----근거 서류를 <u>첨</u>부해야 한다.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7조(감사 또는 조사보고에 대한 처리)</p> <p>① ~ ② (생 략)</p> <p>③ --의회에 <u>보</u>고하여야 한다.</p>	<p>제17조(감사 또는 조사보고에 대한 처리)</p> <p>① ~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--의회에 <u>보</u>고해야 한다.</p>
<p>제18조(징계)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----- 회피하지 <u>아</u>니하거나 -----.</p>	<p>제18조(징계)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----- 회피하지 <u>않</u>거나 -----.</p>

의안심사보고서

(의안번호 851)

1. 의안명 :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
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

2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: 2011. 10. 7(금)
- 나. 제안자 : 이효상 의원 외 5명
- 다. 위원회 회부 : 2011. 10. 13(목)
- 라. 위원회 심사 : 2011. 10. 14(금)

3. 제안설명요지 (제안설명자 : 이효상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에 따라 법률과 상충되는 부분을 수정 또는 삭제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제2조(감사) 제2항 및 제9조(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) 제5항의 일부 조문 변경
 - ▶ “7일 이내” ⇒ “9일의 범위에서”
 - ▶ “증언 또는 진술을” ⇒ “허위증언·선서거부·정해진 기간까지 요구서류 미제출 또는 진술을”

4. 근거법령

- 지방자치법 제41조(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)

5. 검토의견 (전문위원 배청숙)

- 지방자치법 개정(2011.7.14 공포, 2011.10.15 시행)과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의거 상위법과 상충되는 부분을 개정하였으므로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.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